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3일,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7.2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8.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개호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

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으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영난은 저출산 및 지방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개별 어린이집의 운영상 미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공공성,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의 형평성, 사회복지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세제혜택에 따른 제한 및 취약지에 거주 중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사업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성일중 의원, 서지영 의원, 이개호 의원, 정을호 의원, 전진숙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